

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불임의 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으로,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제4호 및 같은 법 제69조의7제4호에 의거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후 수급자격 불인정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2. 12. 06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



1. 건 명: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
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(불임2 참고)

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송달 서류의 명칭	송달의 주요 내용	송달불능 사유
박○영	1982.03.28.	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새천년로16번길 (이하생략)	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1부	불인정 대상 및 사유, 심사청구 안내	폐문부재 (2022년 11월 21일 최초발송, 11월 22일 재발송)

4. 공 고 기 간: 2022. 12.06. ~ 2022. 12.20.(14일간)
5. 문 의: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영삼(Tel. 031-289-2220)